



# 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**「임금체불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제정(안)**

---

경영애로로 임금을 체불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해소 지원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「임금체불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취급기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## 1. 시행근기

- 중소기업청 「임금체불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지침 알림」  
(기업금융과-71, 2016.01.18.)
- 신용보증재단중앙회 「임금체불기업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제정 및 시행 알림」(보증 2016-1493, 2016.01.18.)

## 2. 주요내용 : 세부내용 <붙임1>문서 참조

- 가. 지원규모 : 500억원 (전국)
- 나. 대상기업 :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다. 보증방법 : 개별보증
- 라. 보증한도 : 같은기업당 100백만원 이내 (체불임금 범위내)
- 마. 보증비율 : 100%
- 바. 보증료율 : 연 1.0%
- 사. 지원제외 :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의 80%이상인 기업

## 3. 시행일 : 2016년 1월 18일 (접수일 기준)

- 붙임 : 1. 「임금채불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1부.  
2. 「임금채불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관련 입금계좌 상세내역 알림 공문 양식 1부. 끝.

---

★과장

팀장

부장

이사

협조자 전산지원부장

전략기획실장

시행 보증지원부-39 ( 2016.01.21. ) 접수 ( )

우 0413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7층 / 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  
전화 / 02-2174-5212 /전송 02-3278-8117 / [pym1222@seoulshinbo.co.kr](mailto:pym1222@seoulshinbo.co.kr) / 공개